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</p> <p>○ 「산업집적법」 제45조의21제1항 제3호* 및 제5호** 사업용 부동산 - 취득세 35%, 재산세 50% * 공장·지식산업센터 등의 설치·운영과 분양·임대·매각에 관한 사업 ** 입주기업 근로자 후생복지·교육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용 부동산</p> <p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</p> <p>○ (좌 동) - <u>취득세 25%(비수도권 35%)</u> <u>재산세 25%(비수도권 50%)</u></p> <p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p>

□ 개정내용

- 산업단지 개발·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감면을 3년 연장하되,
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·비수도권 차등 감면율 적용

< 산업단지공단 사업용 부동산 감면 재설계 >

< 개정 전 >	구분	< 개정 후 >	
취득세 35%	수도권	취득세 25%, 재산세 25%	축소
재산세 50%	비수도권	취득세 35%, 재산세 50%	-

□ 적용요령

- 2026. 1. 1. 부터 시행(부칙 §1)